애니메이션산업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13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운영실적이 저조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중 "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"를 "애니메이션산업의"로 한다.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	제4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
립·시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	립ㆍ시행) ①
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을	
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	
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	<u>애니메이션산업의</u>
선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	
<u>니메이션산업의</u> 진흥에 관한 기	
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	
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) ①	<u><삭 제></u>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	
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	
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	
메이션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	
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	
<u>을 자문한다.</u>	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	
립・시행	
2.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	
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	
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	
회의에 부치는 사항	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위촉하되,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